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0

발의연월일: 2020. 9. 3.

발 의 자:김한정·이상헌·전혜숙

홍기원 · 김용민 · 김경협

정춘숙・이재정・이수진비

이성만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차입공매 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매도의 특성상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라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고, 투기적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되어 공매도를 더 욱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를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외국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보유증권잔고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및 과징금 부과·징수규정을 마련하여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1항 및 안 제180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하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총액의 규모를 초과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상장증권에 대하여"로 한다.

제4편제3장에 제18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0조의4(매매수량관리 및 확인) ① 매도자 중 외국인, 외국법인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주문수량 확인 및 차입공 매도 관리를 위하여 보유한 상장증권의 잔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의 위반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다.

제4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0조의3"을 각각 "제180조의4"로 한다.

제427조제1항 중 "제180조의3"을 "제180조의4"로 한다.

제429조의2의 제목 중 "교란행위에"를 "교란행위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78조의2"를 "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로 한다.

제435조제1항 중 "제180조의3"을 "제180조의4"로 한다.

제437조제2항 전단 중 "제180조의3"을 "제180조의4"로 한다.

제44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장증권에 대하여 공매 도를 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장증권의 공매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제445조제48호 중 "제180조의3"을 "제180조의4"로 한다.

제449조제1항제3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5. 제180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입공매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도계약이 체결된 차입공매도는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 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 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 는 시가총액의 규모를 초과하 를 할 수 있다. 는 주권상장법인의 상장증권에 대하여-----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0조의4(매매수량관리 및 확 인) ① 매도자 중 외국인, 외국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 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u>제180조의3</u>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 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법인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주문수량 확인 및 차입공매도 관리를 위하여 보유한 상장증권의 잔고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의 위반사항을 검사하 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보 고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자료 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한다.

| 세426조(보고 및 조사) ① |
|------------------|
| |
| |
| 제180조의4 |
| |
| |
| |
| |
| |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 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 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④ ~ ⑧ (생 략)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저 압수·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u>제180조의3</u>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 ② (현행과 같음) |
|--------------------|
| ③ |
| |
| |
| |
| <u>제180조의4</u>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 ④ ~ ⑧ (현행과 같음) |
| 세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
| 압수·수색) ① |
| |
| |
| 제180조의4 |
| |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 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 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 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 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429조의2(시장질서 <u>교란행위에</u> 지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u>제</u> 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 조 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세429조의2(시장질서 <u>교란행위</u> |
| <u>등에</u> 대한 과징금) |
| 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 |
| |
| |
| |
| |
| |
| |
| |
| |
| |
| |
| |
| · 세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 |
| 고자 보호) ① |
| 1 1 1 1 U |

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의 정보교환 등)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u>제180</u>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대하여 목적·범위 등을 밝혀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u>제180</u> 조의 <u>4</u> | - |
| | - |
| | - |
| | - |
|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괴 | - |
| 의 정보교환 등) ① (현행과 길 | - |
| <u>o</u> | |
| ② | - |
| | - |
| <u>제180</u> |) |
| 조의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위반행위로 얻은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이하인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 9. (생 략) <신 설>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제443조(벌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
|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허용되 |
| 지 아니하는 상장증권에 대하 |
| 여 공매도를 하거나 허용되지 |

②・③ (생략)

-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7. (생 략)
 -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 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 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8. (생략)
 - 39.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 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 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장증권 |
|------------------------|
| 의 공매도 또는 그 위탁이나 |
| 수탁을 한 자 |
| ②·③ (현행과 같음) |
| 네445조(벌칙) |
| |
| |
| <u>.</u> |
| · 1. ~ 47. (현행과 같음) |
| 48 |
| |
| |
| 제180조 |
| |
| <u>의4</u> |
| |
| |
| |
| 세449조(과태료) ① |
| |
| |
| |
| 1. ~ 38. (현행과 같음) |
| <u><삭 제></u> |
| |
| |
| |

39의2. ~ 39의4. (생 략) <u><신 설></u> 39의2. ~ 39의4. (현행과 같음) 39의5. 제180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 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40. ~ 49. (생 략)

② ~ ④ (생 략)

40. ~ 4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